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
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8월 22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9월 2일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엄 상 섭

나.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따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관련 업무가 道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의 폐지

라. 참고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희 중

○ 본 조례안은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따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관련 업무가 道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따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관련 업무가 道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